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60
----------	-----

2015. 10. 21.(수)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임순묵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15년 10월 2일

다. 회부일자 : 2015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10월 12일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이에 따른 변동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관계법령 변경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 진흥법」 (안 제1조)
- 위촉직 위원 자격요건 삭제(안 제2조)
- 기타 조문 정비 등
(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김학두)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상위법령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은* 지방심의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현행 조례에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달리 별도로 규정하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3항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중앙심의위원회,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있어 상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 기타 조문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제19조”를 “제17조”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전임위원”을 “전임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공사로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호 중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9조제2항”을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를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제13조 중 “제23조”를 “제22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건설기술관리법</u>」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건설기술진흥법</u>」 ----- ----- 제17조 ----- ----- ----- -----</p>
<p>제2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p> <p>② <u>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u></p> <p>③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u></p> <p>1. <u>건설 업무와 관련된 도 및 시·군 5급 이상의 공무원</u></p> <p>2. <u>건설 관련 단체 임원 및 연구기관의 임원</u></p> <p>3. <u>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제2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u></p> <p>③ <u>위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제3조(위원의 임기) ① (생략)</p>	<p>제3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p>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는 보궐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제1호에서

정한 공사로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영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정한 사항

제7조(소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 ⑥ (생략)

같음)

② -----
----- 전임자 -----

--- 남은 기간 -----
-----.

제6조(위원회 심의사항) -----
-----.

1. 영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공사로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

제7조(소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 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제17조제2항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소위원회의 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
기를 두며, 간사는 건설기술심
의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
기는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직
원이 된다.

② (생략)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속임
수에 의한 방법 또는 영 제23조
의 결격사유를 제외하고는 본인
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

-----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건설
기술심의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
----- 제22
조 -----

-----.

관계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마.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3.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중앙심의위원회,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 지방심의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

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⑥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 ⑦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분과위원회" 및 제9조제7항 중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로, 제9조제7항 및 제15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제15조제3항 중 "제6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은 "제17조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으로 본다.
- ⑧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심의위원회 및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5.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소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